

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(제306조제2항 관련)

구분	기준
1. 법인성격	항공 조종,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
2. 전문인력	<p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을 확보할 것</p> <p>가. 법 제35조제3호에 따른 자가용 조종사 이상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</p> <p>나.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다.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라.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
3. 시설 및 장비	<p>가.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학과시험을 위한 학과시험장 (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</p> <p>나.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실기시험을 위한 이륙 및 착륙 시설(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</p> <p>다.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관련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실 및 사무기기</p>